

● 제324회 ●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890)

2024. 06. 1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90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김영옥, 강석주, 최호정 의원 (15인 찬성)

나. 제출일자 : 2024. 05. 27.

다. 회부일자 : 2024. 05. 30.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의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함(안 제4조제2항).

나.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협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산지원) ① (생략)	제4조(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u>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u>공유재산의 우선임대</u>) <u>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u>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 (생략)</p>	<p>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6조(표창) 시장은 협의회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p>

2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구체화 (안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조직체들에 의해 구성된 민간의 대표성을 지닌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¹⁾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법인임.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총회원 수는 504명(단체 446, 개인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협의회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편성한 예산 및 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은 보조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구성되어 있음.

〈표〉 최근 3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최종예산	집행액	잔액
2021	889,617	800,938	88,679
2022	902,560	831,598	70,962
2023	968,069	904,130	63,939

- ‘24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금은 10억 6,175만원으로 주요 추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협의조정사업

- 사회복지 관련 행사 개최
- 국제협력교류
- 우수직원 국내외 연수
- 사회복지직능위원회 운영
- 사회복지협력
- 직능협회 운영지원 : 16개 단체 대상 입주분담금 지원
-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 경영 컨설팅 및 교육(연중)

○ 협의회육성사업

- 협의조정 : 시·도협의회 교류(연중), 구협의회 간담회 및 워크숍
- 위원회 운영(10개) 및 회원관리

○ 사회복지교육사업

- 사회복지 직급별 교육
- 사회복지 전문 교육
- 사회복지 재무회계교육

- 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교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신건강지원 역량강화

○ 정책개발사업

- 정책활성화 : 정책간담회 및 서울복지포럼
- 조사연구

- 시·도 단위의 광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임. 또한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²⁾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서울시는 2021년 본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바 있음.
- 다만, 본 개정안은 지원 시 지원 경비의 성격과 항목을 검토해 예산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2)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및 표창 (안 제4조의2 및 제6조 신설)

- 동 조례개정안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우선임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또한, 사용허가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⁴⁾의 방법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보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히 공유재산의 임대를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사회복지협의회는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함.

3) 집행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임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본 조례개정안은 적법하다는 입장임.

3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우선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표창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함.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한편,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민간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에 대해 표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고 판단됨.